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수립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규정(안 제2조)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-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
-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-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은 행정관리국장, 주민생활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
다. 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함(안 제11조)

- 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

3. 제정근거

가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
나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

4. 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9. 10. ~ 9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9.10. 1)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 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
4.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
5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6.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.
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, 주민생활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
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개요,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의안건 제출) 해당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